
「산안법 제31조 및 제32조」
`17년도 민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계획

2017.

‘17년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계획

□ 목적

- 민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제고 및 법적 책임 확보
 -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교육 수요자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

❖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(등록기관의 평가)

❖ 산업안전·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3(직무교육 위탁기관의 평가 등)

□ 평가대상 기관 : 68개 기관('17. 2. 21 기준)

- (안전보건교육) 산안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48개 기관
- (직무교육) 산안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20개 기관

□ 평가종류

- (정기평가) 교육기관의 연간 교육사업 수행전반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주기적(매년 11~12월, 1회)으로 실시
 -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업무담당자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
- (수시평가)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, 민원 발생 등 특정 사유 발생 기관에 대해 점검형태의 평가 실시
 - 공단 지역본부 업무담당자가 사유 발생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실시
- (모니터링) 신규 등록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 형태의 모니터링 실시('18년부터 신규 등록 기관 대상)

□ 평가 지표 구성

- (구성 체계) 평가기준 → 평가항목 → 평가지표
- (지표 구성) 운영체계(600점) 및 업무성과(400점) 등 2개 기준으로 구성
 - (운영체계)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(100점, 2개 지표),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200점, 3개 지표),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100점, 3개 지표) 등 3개 항목으로 구성
 - ※ 가·감점 : 포상 및 종합화(가점, 2개 지표), 행정처분(감점, 2개 지표)
 - (업무성과) 교육관리(240점, 4개 지표), 교육생관리(150점, 3개 지표), 고객만족도(130점, 1개 지표), 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(80점, 2개 지표) 등 4개 항목으로 구성

□ 평가 방법

- (평가 주기) 매년 11 ~ 12월에 기관별 1회 실시 (정기평가)
 - ※ 수시평가 및 모니터링은 필요시 수행
- (평가 대상기간) 매년 1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수행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
 - ※ '17년도에 한해 산안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가
- (평가 방법) 5등급(S~D) 절대평가(1,000점 만점)

S등급(최우수)	A등급(우수)	B등급(보통)	C등급(미흡)	D등급(불량)
900점 이상	800~899점	600~799점	400~599점	400점 미만

- 평가지표 중 “0”점이 5개 이상일 경우 “D”등급 부여
- 법적 등록기준 미 충족 기관은 “D”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 행정조치

□ 세부 평가 절차(정기 평가)

【평가반 운영】

- (평가반 구성) 6개 권역별 공단 2명, 고용부 1명, 외부전문가 1명 등 4명 내외 6개반으로 구성·운영
 - ※ 평가반 구성 시 고용부 반원 참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 - ※ 외부위원은 민간, 학계 등 20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
- (사전교육) 평가일 이전, 평가반 대상 사전교육 실시(공단 교육원)

【교육기관 평가 및 검증】

- (교육기관 자체 평가) 교육기관별로 평가결과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, 평가반 방문 평가 시 제출
- (평가반 방문 평가) 사전조사 자료 및 교육기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서류, 시설, 장비 등 현장 확인
 - ※ 직무교육 위탁기관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복 시 병행하여 평가
- (만족도 조사)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교육기관별 교육 이수자 대상 만족도 조사(유선) 실시
- (결과 검증) 6개 권역별 평가반을 통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회의 개최(평가자의 착오, 과다 해석 등에 대한 점수 보정)

【이의신청 및 확정】

- (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) 평가지표별 점수, 총점, 등급 등 평가결과 검증회의 후 7일 이내 대상 교육기관별 공문 발송
 -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신청 접수
 - ※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10일 이내 재확인 실시 (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경미한 사항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 하고 필요시 방문평가<외부위원 제외 최초 평가반에서 평가> 실시)

- **(결과 확정)** 최종 평가결과는 교육기관 평가위원회*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 및 승인 요청

* 교육기관 평가위원회(가칭)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(고시 반영 추진)

【확정 평가결과 통보】

- **(확정 통보)** 고용노동부 승인 후 5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별 확정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발송
 - 통보내용 : 평가결과 총점, 등급 및 평가결과 공개관련 안내 등

□ 평가결과 활용

- **(결과 공개)** 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등급 공개
 - (On-Line 공개) 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*, 직무교육센터 및 앱(App)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공개
 - * 안전보건교육 종합 정보시스템(www.kosha.or.kr/kosha-edu)

<공개 예시>



- (Off-Line 공개) 공단 월간지 등을 통해 결과 공개

□ 향후 주요 추진 일정 (예정)

○ ('17.3월) 평가지표 사전공개

- 공단 홈페이지 및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지표 세부항목, 배점 및 평가 매뉴얼 공개

○ ('17.10월) 평가일정 사전 공고(평가실시 30일 전)

-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문 발송하여 평가일정 공고

○ ('17.11월 ~ 12월) 평가 실시

- 교육기관별 평가반 방문평가

○ ('17.12월) 최종 평가 결과 공개

-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별 공문 발송하여 평가일정 공고